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 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무역정책과 과장 윤상흠(2110-4829), 사무관 조택연(2110-4832)

한결 편리해지는 「구매확인서 발급」 온라인 발급

- 은행 창구발급 폐지, 전자무역포털 「uTradeHub」 단일 발급 -

□ 수출용 물품이나 원재료의 국내 조달시에 이용되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이뤄진다.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물품의 로컬거래에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 환급을 가능토록 해주는 제도이다.

□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외국환은행 창구발급과 온라인 발급(KTNET 포함)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온라인 발급으로 단일화 된다.



□ 그동안은 구매확인서의 신청·발급 및 부가세 영세율 신고자료 제출 업무가 on-line과 off-line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출 부대비용과 납세비용 부담은 물론 국세청의 자료 취합 등 세무행정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.

○ 이에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하여, 무역업체가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 발급받는

방식을 폐지하고 구매확인서의 신청·발급에서부터 국세청 증빙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100% 온라인화 하게 되었다.

□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 시행에 따라 무역업체는 은행방문 없이 신속하게 온라인 신청·발급받을 수 있으며,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의무도 없어진다.

○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KTNET이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게 되므로, 개별 업체들은 분기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영세율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 첨부 없이 발급명세서만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된다.

□ 아울러 발급수수료도 오프라인 대비 건당 2,000~4,000원 인하되며,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전자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관되어 필요시 언제든 조회·출력이 가능하다.

○ 또한 공급 업체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공급업체에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는 수고도 덜 수 있게 된다.

□ 구매확인서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가전자무역포털인 uTradeHub (www.utradehub.or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, 로그인 후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하면 되며 신청서 입력시 구매 아이템과 수출근거서류의 정보를 입력하여(실제 서류 첨부는 불필요) 발급기관을 거래은행과 KTNET중에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.

□ 지식경제부 윤상흠 무역정책과장은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"KTNET"내에 구매확인 Help Desk 운영을 통해 무역업체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

□ 구매확인서 안내 홈페이지(http://www.egume.or.kr)를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.

구매확인서 안내 홈페이지 화면 (**http://www.egume.or.kr**)

